#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0

발의연월일: 2020. 6. 10.

발 의 자: 구자근 · 권성동 · 김정재

김석기・강기윤・송언석

정진석 · 권명호 · 김태흠

정희용 · 주호영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규제지역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멈추지 않고 오르고 있음. 이에 따라 그간의 대출 제한, 보유세 강화 등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있음.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 부족에 따른 매물이 없기 때문이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 수요 억제와 함께 취득세 등거래세 인하를 통해 주택 거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제기됨.

다만, 취득세 인하 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취득세율 조정은 필요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취득세 비중은 20 16년 기준 2.0%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0.4%보다 월등히 높 은 수준임.

이에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낮춰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은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임(안 11조제1항제8호).

법률 제 호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가목 중 "1천분의 10"을 "1천분의 5"로, 나목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를 "1천분의 10"으로하고, 계산식은 삭제하며, 다목 중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을 "9억원을 초과하고 15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20"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취득당시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	
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	
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	8
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	
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	
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	
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	
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	
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 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 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 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 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 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 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x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당시의 가백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 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u>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u>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가
<u>1천분의 5</u>
나
<u> 1천분의 10</u>

( 해당 주택의 × <u>2</u> - 3 ) × <u>1</u> 취득당시가액 <sup>3억원</sup> - 3 ) ×

다. 취득당시가액이 <u>9억원을</u> <u>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u> <u>0</u> < 신 설 >

② ~ ④ (생 략)

다. ----- 9억원을 초과하고 15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20 라. 취득당시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

② ~ ④ (현행과 같음)